

이사회 규정 [제정 : 1995. 6. 8 , 최종개정 : 2017. 9.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무)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 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중에 정한다.

②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제7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정기 이사회의 개최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최소한 매 분기 1회씩 개최하도록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① 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한다. 단,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이사의 순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2(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이사회는 성립은 이사 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이사회 결의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의결권제한) 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 및 보고 사항) ①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사. 주식의 소각

아.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자.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차.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카.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

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파. 주식배당 결정

하. 이사의 보수

거. 관련 법령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단,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기타 주주총회
에의 보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는 제외함)

너.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경영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매기의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 자금 운용

다.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라.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마.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바.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 방침

사.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 제도

아. 10억원 이상 기부금 집행 기안의 승인

3. 조직 및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본조직의 편성 및 개발

나. 중요한 업무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다. 중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발

라. 지점, 공장, 사무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단, 공장, 출장소, 영업소, 사무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억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이외의 출장소, 영업소, 사무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본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법규상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소규모분할합병, 간이주식교환 및 소규모주식교환의 결정

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4. 재무에 관한 사항 (총 투자액 또는 지출이 50억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법규상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 후 투자비 등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사의 재승인을 받기로 한다.)

가.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나. 중요한 계약의 체결

다. 결손의 처분

라. 주요시설의 신설 및 개발

마. 신주의 발행

바. 사채의 모집

사. 준비금의 자본 전입

아. 전환사채의 발행

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차. 다액의 자금 도입 및 보증행위

카.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5.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나.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의 임원 겸임

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선임 및 해임

라.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결의 사항에 대한 재결의

7. 기타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

나.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다.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라.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임원의 승진, 비등기임원의 선임, 해임 및 상담역 또는 고문의 선임, 해촉 등 인사 사항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두기로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⑥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결의사항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어느 이사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임) ①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당해 사항의 시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총무팀장이 이에 임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부의될 원안을 접수 등록하고 회의개최 일주일 전까지 전 이사에 게 회의소집 통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동의한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회의 소집통고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한다.

④ 회의 의사록은 [별표 1]의 서식을 참고하여 간사가 작성한다.

⑤ 간사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회의의 결과를 폐회 후 7일 이내에 전 이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의 의사록 서면결의록과 회의에 부의한 원안은 간사가 보관한다.

부칙

부칙 (2006년 1월 9일)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해당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 때로부터 시행하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의 현 감사(들)은 「상법」 및 2005. 11. 7. 개정 전 정관 및 개정 전 이사회 규정에 따른 감사(들)의 권리 및 의무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2009년 3월 20일)

1.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4년 2월 6일)

1. 이 규정은 2014년 2월 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7년 3월 24일)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7년 9월 14일)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